

#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4 - 103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1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1. 제출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출

## 2. 주요골자

- 정기예금 이자수입 반영 및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예치금 항목 신설
-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  -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기정액			변경후			증(△)감
	수입	지출	2014년도말 조성액	수입	지출	2014년도말 조성액	
합 계	50,000	50,000	0	50,533	900	49,633	49,633
남북교류협력기금	50,000	50,000	0	50,533	900	49,633	49,633

### - 자금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기정액	수입액 (변경)	증(△)감	항 목	기정액	지출액 (변경)	증(△)감
합 계	50,000	50,533	533	합 계	50,000	50,533	533
전입금	50,000	50,000	0	비용자성 사업비	40,000	0	△40,000
이자수입	0	533	533	기본경비	10,000	900	△9,100
-				예치금	0	49,633	49,633

## 3. 제출서류

-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: 별첨

#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

# 1. 운용 총칙

회계연도 : 2014년

회계구분 : 남북교류협력기금

## 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
- (2) 설치목적 :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
- (3) 설치년도 : 2014년

##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
- (2)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: 남북관계 변화 추이 등 사업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집행,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,  
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단 방북 사업비 지원

## ③ 기금조성 및 운용

### (1) 기금조성 현황

○ 연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13년도 말 조성액	기정액			변경후			증(△)감
	수입	지출	2014년도말 조성액	수입	지출	2014년도말 조성액	
0	50,000	50,000	0	50,533	900	49,633	△49,633

○ 기금 총 조성규모

2014년도말 조성액 ㉑	용자금 미회수채권 ㉒	총 조성규모 ㉓ = ㉑ + ㉒
49,633	0	49,633

(2) 재원조성 : 구의 출연금, 기금운용수익금, 기타수입금

(3) 지원기준 :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(4) 지원대상 : 기금의 조성,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,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단 방북 사업비 지원

## 2. 자금운용계획

회계연도 : 2014년

회계구분 : 남북교류협력기금

### ①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기정액	수입액(변경)	증 감	항 목	기정액	지출액(변경)	증 감
합 계	50,000	50,533	533	합 계	50,000	50,533	533
전 입 금	50,000	50,000	0	비 용 자 성 사 업 비	40,000	0	△40,000
보 조 금	0	0	0	용 자 성 사 업 비	0	0	0
차 입 금	0	0	0	인 력 운 영 비	0	0	0
용 자 금 회 수 ( 이 자 포 함 )	0	0	0	기 본 경 비	10,000	900	△9,100
예 탁 금 원 금 회 수	0	0	0	예 탁 금	0	0	0
예 치 금 회 수	0	0	0	예 치 금	0	49,633	49,633
예 수 금	0	0	0	차 입 원 리 금 상 환	0	0	0
이 자 수 입	0	533	533	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	0	0	0
기 타 수 입	0	0	0	기 타 지 출	0	0	0

회계연도 : 2014년

회계구분 : 남북교류협력기금

②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기정액	수입액 (변경)	증 △ 감	산 출 내 역
200 세외수입	0	533	533	
210 경상적세외수입	0	533	533	
216 이자수입	0	533	533	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0	533	533	1) 공공예금 이자           533,000원 = 533
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50,000	50,000	0	
720 내부거래	50,000	50,000	0	
721 전입금	50,000	50,000	0	
721-03 기타회계전입금	50,000	50,000	0	1) 일반회계 전입금   50,000,000원 = 50,000
수 입 합 계	50,000	50,533	533	



### 3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회계연도 : 2014년

회계구분 : 남북교류협력기금

(단위 : 천원)

년도별	조 성 액								집 행 액							잔 액 (㉠-㉡)
	계 ㉠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(㉡)	비용자성 사업비	응자성 사업비	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	차입금 원리금 상환	예수금원 리금상환	기타 지출	
2008년 까지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09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0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1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2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3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4년도	50,533	50,000	0	0	0	0	533	0	900	0	0	900	0	0	0	49,633
합 계	50,533	50,000	0	0	0	0	533	0	900	0	0	900	0	0	0	49,633



## 4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회계연도 : 2014년

회계구분 : 남북교류협력기금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치(탁)처	예치 및 예탁액				증 감 (㉑-㉒)	비 고
		2012년도말 현재액	2013년도말 현재액㉑	2014년도말현재액㉒			
				기정액	변경액		
	소계			0	49,633	49,633	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	총 무 과	1

(2014. 12. 2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김 은 모 ]**

#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1. 안 건 명

가.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17일 (월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4년 11월 21일 (금)

## 4. 관계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

##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# < 제안이유 >

- 본 변경 안은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서 의결 후 당초 운용계획 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남은 지출금액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 10분의 5 이상 변경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함.

### < 주요내용 >

가. 정기예금 이자수입 반영 및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예치금 항목 신설

나.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## ○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기정액			변경후			증(△)감
	수입	지출	2014년도말 조성액	수입	지출	2014년도말 조성액	
남북교류 협력 기금	50,000	50,000	0	50,533	900	49,633	49,633

※ 지출금액 : 900천원(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지급)

#### ○ 자금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기정액	수입액 (변경)	증(△)감	항 목	기정액	지출액 (변경)	증(△)감
합 계	50,000	50,533	533	합 계	50,000	50,533	533
전입금	50,000	50,000	0	비용자성 사업비	40,000	0	△40,000
이자수입	0	533	533	기본경비	10,000	900	△9,100
-				예치금	0	49,633	49,633

## [검토의견]

-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설치되어 총사업비 5,000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관련 책자제작 820만원, 방북사업 4,000만원, 기타 운영비에 18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.
  
- 그러나, 그 동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현재 정부의 5.24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대북지원이나 인적 교류 일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방북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방북사업 미실시에 따른 방북비 4,000만원과 이에 따른 책자 제작비 820만원이 미집행되었고, 운영비 180만원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회 회의개최에 따라 9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이 미집행되어 총 4,91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, 실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  
-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이유로는 2014.11.11.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2명이 1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교류 추진방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,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하여 당초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 5,000만원 중 심사수당 90만원을 집행하고 4,910만원이 남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 10분의 5 이상 변경사유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.
  
- 그러나 동 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북한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민족을 돕고자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및 정부의 남북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비록 2014년도에는 당초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사업실적이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교류가

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함은 물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남북협력사업 자금을 조성하는 기금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고, 또한 집행잔액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 10분의 5 이상 변경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2014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우리 구에서 2014년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추진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던 바, 향후 우리 구에서도 남북교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파주시 등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5년도에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 협력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계획을 세워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 관 계 법 규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24호, 2013.9.26., 일부개정]

**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**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**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
2. 결산보고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 참고사항

## ■ 대북지원사업 물품 반출 절차(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 시)

- 우리 구 단독적으로 대북지원사업 물품 반출은 불가능하며 통일부 허가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함

※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관한 규정

[통일부고시 제2012-2호, 2012.7.26]

제14조(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) ①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  2.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(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.)
- ②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.

## ■ 5.24 조치

- 2010.5.24.부터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('10.3.26.)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의 포괄적 대북제재 조치시행

-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행 전면 불허
- 남북교역 중단
-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
-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(개성공단 제외)
-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 
(단,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예외)